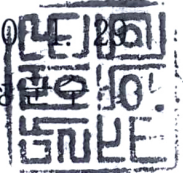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9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0. 1. 15.

제 출 자 : 달성군의회



1. 제안이유

2020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주요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주민 생활만족도를 높이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테크노폴리스, 국가산단 및 성서5차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원녹지과 내 공원관리팀을 신설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 등 아동관련 업무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희망지원과 내 아동팀을 신설하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관리팀 신설 등 2020. 7. 1.일자 달성군 보건소 확장 이전에 따른 보건소 직제 개편을 주요 목적으로 함.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산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성별/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 / 의견 있음 등

(3) 규제심사 : 원안 동의 / 의견 있음 등

(4) 입법예고 : 2020. 1. 15. ~ 1. 28.

(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경제환경국)제2항제5호 중 “녹지·화훼·산림조성·산림보호·공원”을
“녹지·화훼·산림조성·산림보호·공원개발·공원관리”로 한다.

제7조(주민복지국)제2항제3호 중 “복지나눔·복지연계·장애인복지·드림스타트”를
“복지나눔·복지연계·장애인복지·드림스타트·아동”으로 한다.

제9조(정책관광국)제2항제3호 중 “문화예술·체육진흥·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
등”을 “문화예술·체육진흥·문화체육시설”로 한다.

제11조(소장)제3항제1호 중 “보건행정·통합건강증진·의약관리·감염예방·가족보건”을
“보건행정·의약관리·감염예방·진료지원”으로 하고 제2호 중 “지역건강·건강생활·
노인건강”을 “건강증진·질환관리·가족보건·치매관리·건강증진센터운영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 및 별표 1의
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경제환경국) ① (생략) ② 경제환경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4. (생략) 5. <u>녹지·화훼·산림조성·산림보호·공원</u> 등에 관한 사항	제6조(경제환경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녹지·화훼·산림조성·산림보호·공원개발·공원관리</u> ---
제7조(주민복지국) ① (생략)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·2. (생략) 3. <u>복지나눔·복지연계·장애인복지·드림스타트</u> 에 관한 사항 7. (생략)	제7조(주민복지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<u>복지나눔·복지연계·장애인복지·드림스타트·아동</u> ----- 7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정책관광국) ① (생략) ② 정책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·2. (생략) 3. <u>문화예술·체육진흥·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</u> 등에 관한 사항 4.·5. (생략)	제9조(정책관광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<u>문화예술·체육진흥·문화체육시설</u> ----- 4.·5.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소장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1. <u>보건행정·통합건강증진·의약관리·감염예방·가족보건</u> 2. <u>지역건강·건강생활·노인건강</u> 등에 관한 사항	제11조(소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 <u>보건행정·의약관리·감염예방·진료지원</u> 2. <u>건강증진·질환관리·가족보건·치매관리·건강증진센터운영</u> 에 관한 사항

【별표 1】 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

(개정 2020. 07. 01.)

명 칭	소 재 지	관 할 구 역
달 성 군 보 건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130길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27	달성군 일원
화 원 읍 보 건 지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94	화원읍 일원
논 공 읍 보 건 지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779	논공읍 일원
다 사 읍 보 건 지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 7	다사읍 일원
유 가 읍 보 건 지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로96길 10	유가읍 일원
옥 포 읍 보 건 지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458길 6-2	옥포읍 일원
가 창 면 보 건 지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100	가창면 일원
하 빈 면 보 건 지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423	하빈면 일원
구 지 면 보 건 지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11길 38	구지면 일원
음 리 보 건 진 료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음동1길 9	봉리, 용1·2·3리, 상리, 쌍계1·2리, 초곡리, 음리, 양리1·2리
한 정 보 건 진 료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달창로26길 17	한정1·2·3리, 가태1·2리, 본말1·2리
반 송 보 건 진 료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용연사길 11	기세리, 반송1·2리, 김흥 1·2·3리
봉 촌 보 건 진 료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남로52길 66	봉촌1·2리, 동곡1리
무 등 보 건 진 료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734	대평1·2리, 무등1·2리, 기곡1·2리
대 암 보 건 진 료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과학남로53길 5-3	대암1·2리, 목단1·2리, 유산리, 내1·2리
징 리 보 건 진 료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10길 46	오설리, 도동1·2리, 징리
고 봉 보 건 진 료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동로 47-2	고봉리, 평촌1·2리, 가천리, 예현리, 응암1·3리

□ 지방자치법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

-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